## 도시관리계획(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8호(2005. 2. 5.)로 결정된 둔촌동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(기부채납)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(결정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1월 일

서울특별시장

#### I. 결정(변경) 취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8호(2005. 2. 5.)로 결정된 둔촌동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(기부채납)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## Ⅱ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###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#### 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	구역명	위 치		비고		
十世	표시번호	Täö	귀 시	기 정	변 경	변 경 후	미끄
변경	-	삼익연립 (강동구 둔촌동 85-2호) 지구단위계획구역	강동구 둔촌동 85-2호	9,914.0	감)105.2	9,808.8	-

#### ■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삼익연립 (강동구 둔촌동 85-2호) 지구단위계획구역	• 면적 변경 9,914.0 m² → 9,808.8 m² 감) 105.2 m²	• 측량결과의 구적오차에 따라 구역면적 변경

#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# 1. 용도지역 결정조서

	 구 분		면 적 (m²)	구성비	비고	
	丁 正	기 정	변 경	변 경 후	T84	미포
합 계		9,914	감) 105.2	9,808.8	100.0	-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9,914	감) 105.2	9,808.8	100.0	10층으로 완화

※ 측량결과의 구적오차에 따른 구역면적만 변경되고 용도지역 변경은 없음

# 2. 기반시설 결정(변경)조서

### 가. 교통시설

### 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		규	모			연장			사용	최 초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 점	종 점	형태	의 조 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	2	11	8	국지 도로	90	둔촌동 82-3	둔촌동 86-2	일반 도로	서고제34호 (76.2.20)	기부채납 49.0㎡
변경	소로	2	11	8	국지 도로	90	둔촌동 82-3	둔촌동 86-2	일반 도로		
기정	소로	3	63	10	국지 도로	482	둔촌동 115-2	둔촌동 19-2	일반 도로	서고제34호 (76.2.20)	기부채납 238.3㎡
변경	소로	3	63	8	국지 도로	482	둔촌동 115-2	둔촌동 19-2	일반 도로		

### ■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2-11	소로2-11	<ul> <li>도로면적 변경</li> <li>면적: 49.0 m² → 0 m²</li> </ul>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(기부채납) 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로 변경
소로3-63	소로3-63	• 도로 폭원 변경 - 폭원: 10m → 8m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(기부채납) 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내 도로 변경

### 나. 공간시설

#### 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m²)	비율 (%)	최초 결정일	비고
폐지	_	공공공지 (쌈지공원)	강동구 둔촌동 85-2호	208.4	2.1	서고제2005-38호 (2005.2.5)	기부채납 (사업부지의 일부)

### 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공공지 (쌈지공원)	<ul><li>폐지</li></ul>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(기부채납) 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공지 폐지

##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## 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#### 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	면적(m²)	비고	
⊤ <del>世</del>	기정	변경	변경후	미끄
공동주택지	9,418.3	증) 390.5	9,808.8	
도로	287.3	감) 287.3	_	
공공공지(쌈지공원)	208.4	감) 208.4	-	

<sup>※</sup> 측량결과의 구적오차에 따른 구역면적이 9.914m에서 9.808.8m²로 변경되어 변경 면적에 105.2m²의 편차가 생김

###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 경	• 공동주택지 9,808.8m²	•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(기부채납) 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 내 기반시설을 변경·폐지하고 청소년 수런시설 등을 조성하여 제공

- 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규모·건축선·형태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- 가. 건축물의 용도 결정(변경)조서
- 1) 지정용도

구 분	적 용 위 치	지 정 용 도
페 지	강동구 둔촌동 85-2호	•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

#### 2) 허용용도

구 분	적 용 위 치	지 정 용 도
신 설	강동구 둔촌동 85-2호	<ul> <li>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</li> <li>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</li> <li>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, 도서관</li> <li>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</li> <li>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</li> </ul>

###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폐지	• 지정용도 폐지	•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물인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 용도를 폐지하고 허용용도를 신설
신설	• 허용용도 신설	<ul> <li>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</li> <li>→ 허용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,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변경</li> </ul>

#### 나. 건축물의 규모(건폐율, 용적률, 높이) 결정(변경)조서

#### 1) 건폐율

그 브		지침 내용		н л
T E	기 정	증 감	변 경	미ᅶ
건폐율	30%이하	증) 5%	35%이하	_

##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건폐율	• 30% → 35% 5% 증가	•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면도로 측으로 배치하고, 해당 시설의 지상층 면적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 변경으로 건페율을 35%로 상향 조정

## 2) 용적률 (변경없음)

구 분	지 침 내 용	비고
기준용적률	190%	• 단독주택지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(2004.5.15. 서울시)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(10층)용적률 190%
상한용적률	<u>230%</u>	<ul> <li>단독주택지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(2004.5.15. 서울시)의 공공용지 부담률에 따른 용적률 230%를 적용</li> <li>산식: 기준용적률 ×(1+1.3a)</li> <li>※ 기준용적률: 190%, a: 기부채납비율</li> </ul>

<sup>※</sup> 용적률은 단독주택지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기 결정된 용적률 적용

## 3) 높이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최 고 높 이 (규제)	적 용 대 상	비고
최고 높이	30m이하 (해발고도 57m이하)	•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30m 이하 적용	

# 다. 건축물의 건축선·형태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# 1) 건축선

구	분	계 획 내 용	비고
건축	기정	<ul> <li>보도확보를 위해 도로변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폭(2m)설치</li> <li>인접대지 연접부에 6m 건축한계선 확보</li> </ul>	도로 (보행로) 2m 확폭
한계선	변경	<ul> <li>보도확보를 위해 소로3-63호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확보하여 보도 설치</li> <li>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~6m 건축한계선 확보</li> </ul>	공공시설물 설치구간에 3m 건축한계선 확보

##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<ul> <li>소로3-63호 도로변 2m 신설</li> <li>연접부경관계획 6m</li> <li>→ 연접부경관계획 3m~6m</li> </ul>	<ul> <li>소로3-63호 도로 변경(B=10 → 8m) → 2m 건축한계선 신설 대체 (보도조성)</li> <li>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전면도로 측으로 배치 하고, 해당 시설의 지상층 면적 확보를 위한 건축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물 설치구간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3m로 완화 적용</li> </ul>

## 2) 건축물의 형태

구	분	계 획 내 용	비고
지붕	기정	<ul><li>경사형지붕과 평지붕을 조화있게 계획</li><li>양호한 단지경관 형성</li></ul>	다기거리이 구칭
형태	변경	<ul><li> 평지붕으로 계획</li><li> 양호한 단지경관 형성</li></ul>	단지경관의 조화
입면변화		<ul><li>색채, 마감재 등을 이용한 저층부(3개층 이하) 차별화</li><li>특색있고 주변과 조화되는 단지경관 형성</li></ul>	특색있는 단지경관
필드	로티	<ul><li>단지내 보행연결부에 1층 필로티조성</li><li>원활한 보행동선체계 연결</li></ul>	_

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 경	• 지붕형태 변경	• 건축물의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해 중층 이상 공동주택의 일반적 형태인 평지붕으로 계획

# ④ 기타에 관한 계획

# 1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	구 분 계획내용		비고
대지내	기정	<ul> <li>대지내 조경면적 2,950㎡ 확보(31.32%)</li> <li>단지내 여유있는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친화적 오픈스페이스 조성</li> </ul>	법적30% 이상
조경	변경	<ul><li>대지내 조경면적 30%이상 확보</li><li>단지내 여유있는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친화적 오픈스페이스 조성</li></ul>	법적15% 이상
전면 공지	신설	• 소로3-63호 도로변 : <b>2</b> m(보도 부속형)	-

# ■ 변경 사유서

구	분 변경내용 변경사		변경사유
대지내 조경	변경	• 조경면적을 2,950m² 확보 → 30%이상 확보	• 유연한 조경계획을 위해 30%이상 확보로 기재방식 변경
전면 공지	신설	• 소로3-63호 도로변 전면공지 2m 신설	<ul> <li>소로3-63호 도로 변경(B=10 → 8m)</li> <li>→ 2m 건축한계선 신설 대체 (보도조성)</li> </ul>

# 2. 교통처리계획

	구 분		계 획 내 용	비고
보행자동선		아동선	<ul> <li>주동과 어린이 놀이터 등 계획구역 내 시설간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보행동선 계획</li> <li>보행축 상에 주동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보행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</li> </ul>	
동선 계획	차량 동선	기정	<ul> <li>차량출입은 서측 주출입구, 부출입구 설치하여 운영</li> <li>단지 내부에는 비상용차량 통행을 위한 동선 계획</li> <li>주변지역의 교통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는 대상지 서측 둔촌중학교 및 서울 선린초등학교 사이의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로 교통처리</li> <li>비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주차차량은 공동주택지 내 자하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</li> <li>지하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</li> </ul>	
		변경	<ul> <li>차량출입은 동측 출입구를 설치하여 운영</li> <li>단지 내부에는 비상용차량 통행을 위한 동선 계획</li> <li>비상주차를 제외한 모든 주차차량은 공동주택지 내 자하주차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</li> <li>지하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</li> </ul>	

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 경	오기 정정 및 모호한 표현 삭제     차량 출입구: 1개소 신설, 2개소 위치변경	<ul> <li>서측 출입구를 동측 출입구로 오기 정정</li> <li>둔촌중학교 및 서울 선린 초등학교 사이의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로 교통처리는 모호한 표현이므로 삭제</li> <li>건축설계 변경에 따라 차량 출입구 1개소를 신설하고 2개소는 위치변경</li> </ul>

## 3. 공공기여 부담에 관한 계획

위 치	공공기여 용도	공공기여 내용	세부계획	공공기여량	관리청
둔촌동 85-2 공동주택 101동 지하1층 ~지상1층	건축법시행령 [별표]1중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 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, 도서관    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 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	하용용도에 해당 하는 공공기여 건축물 건립 후 관 리 청 에 기부채납	사업시행계확인가 전까지 공공기여 세부계획은 강동구 관계부서와 협의 하여 추진	부자면적의 8% <sup>1)</sup>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(대지 지분 + 건축물) 기부채납     건축물 연면적은 1,360m이상 확보	강동구

주 1) 단독주택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(2004.5.15. 서울시)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(공동주택지) 7층이하→10층으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5%(순부담)이상을 8%이상으로 확보

#### ■ 변경 사유서

구 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 경	<ul> <li>공공기여 계획 변경         (도로,공공공지 → 공공시설물)</li> <li>세부계획(안)은 계획설명서에 명기</li> </ul>	• 강동구 청소년 인구는 서울시에서 10위(71,136인)이나 청소년 수런시설이 없어 공공시설물(청소년수런시설)로 공공기여 계획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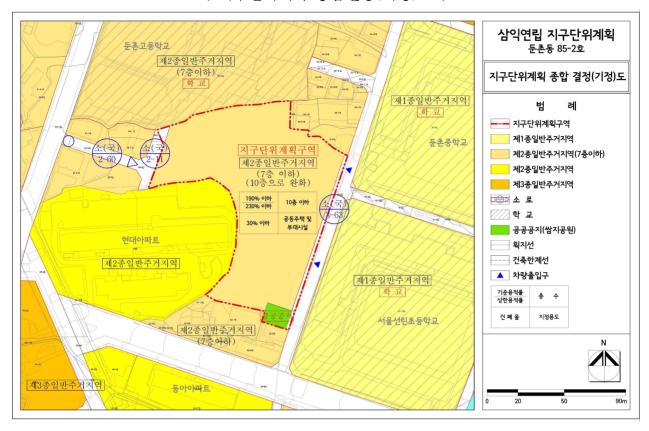
### Ⅲ. 관계도서 : 생략

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,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(② 2133-8390) 및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(③ 3425-603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#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

[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(기정)도 ]



[ 지구단위계획 종합 결정(변경)도 ]

